

	<b>성균관대학교 대학평의원회 회의록</b>		
회 의 명	제37차 성균관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일 시	2022. 4. 26.(화) 16:00	장 소	600주년기념관 3층 제1회의실
참석위원	서용원, 한상만, 김은상, 김윤배, 박동희, 김중환, 양경아, 장필규, 최유선, 전미희, 윤영선 평의원 / 전재욱 평의원 위임장 제출 (이상 총 12명) ※ 이준영 기획조정처장, 유동석 재무팀장, 박형준 계장, 이새롬 직원 배석		
불참위원	-		

## 1. 개 회

- 김은상 의장이 총 12명의 평의원 중 11명이 참석하고 1명은 위임장을 제출하였음을 확인하고, 제37차 대학평의원회 개회를 위한 성원이 되었음을 선언하다.  
 제37차 대학평의원회 안건이 성균관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 1건, 2021학년도 결산(안), 원금보존기금 적립기금 전환(안) 자문 2건, 대학 종합 발전계획 VISION 2030 대학평의원회 운영 근거 및 조직 현황 보고 2건임을 확인하면서, 전차 회의록을 둑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다.
- 제36차 대학평의원회에서 한상만 평의원이 제언하였던 성균관대학교 학칙 개정(안) 중 국제어 이수학점 의무 폐지의 개정사유 정정과 관련하여, 별지와 같이 개정사유를 정정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이준영 기획조정처장이 코로나-19에 따라 온라인을 중심으로 글로벌 석학의 우수한 강의 컨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어 이를 활용하는 글로벌 수업을 신설하였으며, 특히 전공별·분야별 글로벌 강의 컨텐츠를 수월하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 컨텐츠 라이브러리를 구축하였다고 답하다.  
 따라서 해당 학칙 개정사항은 국제어 수업을 폐지한 것이 아니라 이수 의무를 폐지한 것으로, 100% 국제어 수업 지정 강좌 제도 신설, 국제어 수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통하여 여전히 국제어 수업을 개설하여 활성화하고 있다고 말하다.
- 김은상 의장이 추가적인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전차 회의록을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하다.

## 2. 성균관대학교 학칙 개정(안)

- 김은상 의장이 성균관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대한 심의사항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이새롬 직원이 회의자료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입학허가 및 취소 사유 변경 부분에 대해 요약하여 설명하고, 김은상 의장이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다.
- 김중환 평의원이 현행 제19조제2항제1호 내지 3호가 특정 규정에 따라 제정된 것인지, 학교 자체적으로 제정한 것인지 질의하다.
- 이준영 기획조정처장이 입학 취소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기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4가 제정됨에 따라, 본교 학칙이 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며, 현행 규정의 제정 근거는 추후 확인하여 답하기로 하다.

- 김중환 평의원이 해당 시행령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대학이 입학허가의 취소에 대한 자율권이 있었으나, 시행령이 제정되고 이와 동일하게 학칙을 개정함에 따라 대학의 자율권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하다.
- 이준영 기획조정처장이 대학의 자율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법조문의 제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최대한 학칙 등 대학 규정에 최대한 반영하고 있으며, 학칙이 상위규정과 부합하지 않으면 공정성 시비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답하다.
- 한상만 평의원이 현행에 포함되어 있는 기재 금지사항, 평가자 사전 접촉 등에 대한 내용이 개정(안)에서는 제외되어,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어떤 기준에 따라 처리하는지 질의하다.
- 이준영 기획조정처장이 입시요강에 기타 부정한 방법에 대한 내용을 명기함과 동시에, 입시공정위원회를 통해 학칙에 명기되지 않은 예외적인 사례에 대해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여 차기 회의에서 답하기로 하다.
- 김은상 의장이 회의자료 중 대학원 학생정원 조정사항 반영에 따른 부칙 변경과 관련하여, 학과 또는 협동과정이 신설/폐지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공통적으로 반영 되는지 질의하다.
- 이새롬 직원이 학과 또는 협동과정 변동 시 기존 재적생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에 반영한다고 답하다.
- 이준영 기획조정처장이 학과 또는 협동과정이 통합되는 경우, 통합되는 학과로 소속을 변경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생이 원하는 경우 기존 학과로 재적할 수 있으며, 폐지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학과에 계속하여 재적한다고 답하다.
- 이새롬 직원이 회의자료 중 기구의 신설 부분에 대해 요약하여 설명하고, 김은상 의장이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다.
- 최유선 평의원이 부속기관과 부설연구기관의 차이와 성균에너지과학기술원이 부속 기관에 속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다.
- 이준영 기획조정처장이 부속기관은 특정 단과대학이나 기관이 아닌 총장 산하의 직할로서 대학 차원의 연구를 수행하는 독립기관이고, 부설연구기관은 각 단과대학 산하의 부설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답하다.
- 박동희 부의장이 부설연구기관은 자활기관으로 통상적으로 교비가 지원되지 않고 역할에 따라 총장 또는 단과대학 산하에 설치되며, 부속기관은 교비가 지원되는 차이가 있다고 답하다.
- 김은상 의장이 메타사회연구소가 사회과학연구원에 소속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메타사회연구소의 연구분야에 대해 질의하다.
- 이새롬 직원이 해당 연구소는 사회과학연구원에 소속하는 것이 맞으며, 연구분야에 대해 확인하여 추후 답하기로 하다.
- 박동희 부의장이 학교와 같은 공적기관은 모든 조직의 신설/폐지에 대한 사항이

적정한 절차를 거쳐 규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하다.

- 김은상 의장이 본 심의 사안에 대한 기타 의견이 없는지 물고,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 후 평의원 전체의 동의 하에 성균관대학교 학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다.

### 3. 2021학년도 결산(안) / 원금보존기금 적립기금 전환(안)

- 김은상 의장이 2021학년도 결산(안)에 대한 자문사항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유동석 재무팀장이 회의자료 중 자금계산서(교비회계)에 대해 요약하여 설명하고, 김은상 의장이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다.
- 서용원 평의원이 자금계산서 수입의 증감 합계와 지출의 증감 합계가 일치하는지 질의하다.
- 이준영 기획조정처장이 지출부분에서 비용계정 집행금액의 증감에 미사용차기이월 자금 계정과목의 증감을 반영하면 자금계산서 수입의 증감 합계와 지출의 증감 합계가 일치한다고 답하다.
- 김윤배 평의원이 캠퍼스별 건축공사가 순연되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다.
- 이준영 기획조정처장이 자과캠의 경우 교내 구성원의 의견을 추가 반영하여 설계하는 과정에서, 인사캠의 경우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과정과 재설계 과정에서 착공이 지연되었으며, 현재 양 캠퍼스 모두 착공허가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답하다.
- 윤영선 평의원이 2021년 결산 금액이 전년대비 크게 감소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다.
- 유동석 재무팀장이 2021학년도부터 협력병원의 임상교원에 대한 임상학술연구비 및 법정부담금을 학교가 아닌 병원에서 직접 지급함에 따라, 결산 규모가 감소하였다고 답하다.
- 윤영선 평의원이 재단 전입금이 표기된 계정과목과 전입금 지원기준에 대해 질의하다.
- 유동석 재무팀장이 재단 전입금은 전입금수입 계정과목에 기재되며, 전입금액 중 경상비전입금은 재단의 원칙에 따라, 법정부담전입금은 4대보험 비용 등 실질적인 소요에 따라 지원된다고 답하다.
- 윤영선 평의원이 교원과 직원의 호봉 상승에 따른 교원보수와 직원보수 증감 추세에 대해 질의하다.
- 유동석 재무팀장이 학교의 인력구조가 신규채용, 퇴직 등에 의해 매년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유지되기에 호봉 상승에 따른 교원 및 직원의 전체 보수규모는 크게 변동하지 않는다고 답하다.
- 김윤배 평의원이 학교는 단일호봉제로, 호봉 상승에 따른 급여 인상분이 크지 않다고 답하다.

- 윤영선 평의원이 국공립학교 교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급여 인상이 연동되어 있는지 질의하다.
- 박동희 부의장이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급여 인상은 연동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본교는 등록금 동결 등의 영향으로 수년간 급여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답하다.
- 김윤배 평의원이 사립대학의 지속적인 급여 동결로 인해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급여의 차이가 없어졌다고 답하다.
- 박동희 부의장이 지속적인 급여 동결로 인해 본교의 급여 경쟁력이 낮아졌으며, 이는 대학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말하다.
- 한상만 평의원이 국공립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을 급여인상에 반영하고 있는 상황과 대비하여, 사립대학의 급여는 등록금이 동결 됨에 따라 인상되고 있지 않기에 해외의 우수 교원을 대학으로 유치하는 데에도 걸림돌이 된다고 우려를 표하다.
- 최유선 평의원이 등록금 동결과 관련하여 학생 측에서도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있으나, 학부 등록금의 동결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외국인 등록금은 계속해서 인상되었으며, 학부 등록금의 동결이 학생들의 반대보다는 등록금 인상률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을 제한하는 등의 국가적인 정책에 기인하며, 따라서 대학 차원이 아닌 국가적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하다.
- 김은상 의장이 대학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기관이며, 따라서 등록금뿐만 아니라 기타 국가적인 지원, 기부금 등의 재원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학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제언하다.
- 김은상 의장이 회의자료 중 자금계산서(교비회계)와 관련하여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 후, 이어서 2021학년도 결산(안)의 나머지 내용 및 두 번째 심의사항인 원금보존기금 적립기금 전환(안)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유동석 재무팀장이 회의자료를 요약하여 설명하고, 김은상 의장이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다.
- 김은상 의장이 운영계산서 상 교육부대수입이 감소한 부분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협력병원의 임상교원에 대한 임상학술연구비 및 법정부담금을 병원에서 직접 지급하는데 기인한다고 첨언하다.
- 박동희 부의장이 본교와 관련되어 있는 병원은 삼성생명공익재단에서 운영하는 협력병원인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과,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부속병원인 삼성창원병원으로 구분되며, 의과대학 교원은 병원에서 진료를 담당하는 임상교원과 이외의 기초의학교원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하다.
- 윤영선 평의원이 적립기금의 자금운용 주체에 대해 질의하다.
- 유동석 재무팀장이 재무팀에서 기금운용심의회의 의사결정에 따라 운용하고 있다고 답하다. 사립학교법에서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적립기금의 50%는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투자 가능한 금액 중 일부는 외부위탁 자산운용

사를 통해 운용하고 있다고 하다.

- 윤영선 평의원이 타 대학의 적립기금 운용 사례에 비추어 본교 또한 적립기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하여 적절한 수익을 창출하여야 한다고 제언하다.
- 유동석 재무팀장이 외부위탁 자산운용사인 삼성자산운용을 통해 최대한 안정적으로 적립기금을 운용하고 있다고 답하다.
- 김윤배 평의원이 일반적으로 학부의 재학연한과 재학생수가 대학원을 훨씬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학부와 대학원의 등록금 수입이 비슷한 수준임을 감안 할 때 대학원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왜곡되어 상승되었다고 말하다. 아울러 해마다 발생하는 국유지 사용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질의하다.
- 유동석 재무팀장이 국유지 사용료 연간 약 4억 원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속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답하다.
- 최유선 평의원이 대학원의 등록금이 학부 대비 매우 높게 책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으나, 앞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국가 정책적인 부분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고 답하다.
- 김윤배 평의원이 대부분의 대학원생 등록금은 연구비 등을 통해 지도교수가 별도 지원하고 있다고 답하다.
- 박동희 부의장이 국가적 차원에서 등록금 인상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공감한다고 답하다.
- 김은상 의장이 본 심의 사안에 대한 기타 의견이 없는지 묻고,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 후 평의원 전체의 동의하에 2021학년도 결산(안) 및 원금보존기금 적립기금 전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다.

#### 4. 대학 종합 발전계획 VISION 2030

- 김은상 의장이 대학 종합 발전계획 VISION 2030에 대한 보고사항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보고를 요청하다.
- 대학 종합 발전계획 VISION 2030에 대한 총장 발표자료를 상영하다.

#### 5. 대학평의원회 운영 근거 및 조직 현황

- 김은상 의장이 대학평의원회 운영 근거 및 조직 현황에 대한 보고사항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보고를 요청하다.
- 박형준 계장이 회의자료를 요약하여 보고하다.
- 김은상 의장이 추가 질문 사항이 더 없음을 확인하고, 18:00에 폐회를 선언하다.

붙임 제37차 대학평의원회 회의자료 1부. 끝.

서용원

한상만

전재욱

<위임>

김윤배

김은상

박동희

김중환

양경아

장필규

최유선

전미희

윤영선